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청소행정과장 이주현】

가. 제안이유

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·선별처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의 수입금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(제6조제3항)
- 신설에 따른 기금 재원 조성 근거규정 신설(안 제3조제3항)
- 기타 재활용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수입금 발생 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의 재원조성 근거규정 신설(안 제3조제4항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·선별처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의 수입금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(제6조제3항)신설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한 내용.
- 신설에 따른 기금 재원 조성 근거규정 신설(안 제3조제3항)
- 기타 재활용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수입금 발생 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의 재원조성 근거규정 신설(안 제3조제4항)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(제6조제3항)신설에 따른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의 수입금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근거규정(안 제3조제3항)을 신설하는 내용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